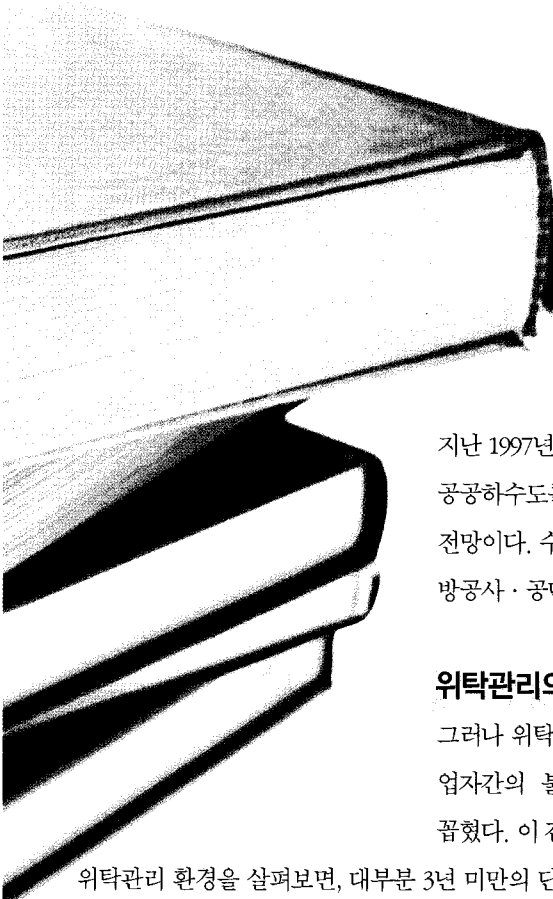


# 하수도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환경부는 위탁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위탁관리 평가시스템 도입은 공공·민간 수탁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7년 하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2000년 41%였던 위탁비율이 2007년에는 64%로 증가되었다. 공공하수도를 위탁관리할 경우 하수처리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비율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수탁관리기관으로는 민간 기업이 347개소 중 16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이 45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위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그러나 위탁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우선 공공·민간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경쟁환경과 위탁성과 평가시스템 부재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같은 문제들은 공공하수도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되어 왔다.

위탁관리 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3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위탁관리 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없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공정성 부분에서도 지자체 직영 및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부가세(10%)가 면제되며,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장기계약으로 민간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등의 악습을 묵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위탁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없어 평가주체 및 절차 등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구분	시설수 (개소)	시설용량 (천톤/일)	평균 시설용량 (천톤/일)	평균 운영 인력(인)	톤당 운영 인력(인/톤)	평균처리 단가(원/톤)
계	347	23,735	68.4	13.9	0.20	100.1
직영	126(36.3%)	8,046(33.9%)	63.9	14.7	0.23	119.9
위탁	221(63.7%)	15,689(66.1%)	71.0	13.4	0.19	89.4
공단·공사	45(20.4%)	6,833(43.6%)	151.8	21.1	0.14	75.3
민간기업	168(76.0%)	8,830(56.3%)	52.6	11.5	0.22	98.2
한국수자원공사	8(3.6%)	26.2(0.1%)	3.3	10.5	3.18	627.1

## 위탁형태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공정성 확보

이에 환경부는 공공·민간 수탁사업자간 경쟁환경의 개선, '위탁관리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결과 공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하수관거와 분뇨처리시설 등을 통합 관리해 비용과 관리 인력을 절감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단순위탁과 시설개량 투자를 포함한 복합위탁으로 구분하여 위탁형태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합위탁의 경우 수탁사업자가 하수도시설의 개량과 개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운영기간 중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위탁기간 역시 위탁의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위탁자의 부담 능력, 예상 사업비,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단순위탁은 3년~5년, 복합위탁은 5년~20년으로 재설정했다.

또한 관계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민간수탁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기술 및 가격 분리의 입찰방식을 적용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 계획과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

다.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탁관리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그간 하수도 위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위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위탁관리 성과평가위원회는 위탁대상 및 범위, 위탁기간 및 대가,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위탁계획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지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서비스는 인력3, 시설5, 운영23, 서비스 질12, 환경9, 재정3 등 총 55개 항목을 평가하며 운영비용을 절감했을 때에는 절감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수탁사업자가 보전할 수 있다. 비용절감은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 부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단순위탁은 1년마다, 복합위탁의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위탁성과를 평가하며 수탁업체는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만료 이전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지자체)와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수탁업체가 제출한 위탁성과서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평가결과를 위탁자에게 회신해야 하며, 위탁자는 성과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제정하여 작년 연말에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은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한 위탁지침을 시행할 경우 하수도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향후 하수도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